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우증권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운용하는 첩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을”이 판매대행 (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 3 조(업무협조)

-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 ②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예탁결제원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4 조(준수의무)

- ① “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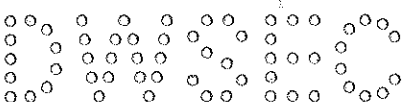
제 5 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6 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 7 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① “을”은 “갑”의 자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 등에 간섭하지 못하며, “을”이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특정 증권 등의 매입을 “갑”에게 요구하거나 증권 등의 부당한 거래를 조장하는 등 “갑”의 자산운용행위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은 “을”,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3 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4 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 8 조(투자광고물의 심사)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 2 편 제 3 장 투자광고]”(이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 2-42 조 제 1 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을”은 제 1 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자광고를 할 수 없다.

제 9 조(수익률의 표시)

“을”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통장상 의무 기재사항)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증권 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회사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임을 표시하는 문언

제 11 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 1 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 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이 없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제 12 조(추가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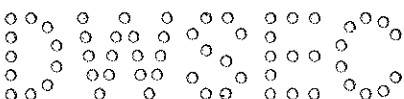
①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갑”과 “을”이 첨부된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첨부된 기재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제 13 조(세부사항)

① 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 14 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5 조(관할법원)

“갑”과 “을”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 ① “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집합투자규약을 “을”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갑”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일 후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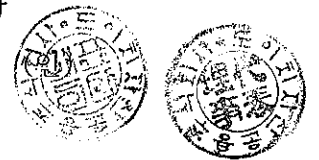
2009년 4월 15일



집합투자업자(갑)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대우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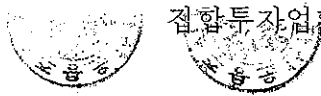
* 첨부 :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부. 끝.



<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도이치 글로벌 커머디티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
3. 도이치 글로벌 올에셋 증권 투자신탁 2호 (주식-재간접형)

2009년 4월 15일



집합투자업자(갑)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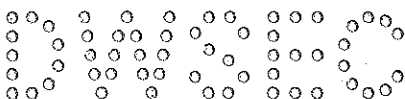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대우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성 태



세부업무 협약서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우증권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9년 월 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세부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는 "갑"과 "을"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서와의 관계)

- ① 이 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② 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 ③ 계약서 및 협약서의 일부조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약서가 우선한다.

제3조(대행표시)

"을"의 위탁판매에 따른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광고선전물, 기타안내문 등에는 "갑"이 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을"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비밀준수의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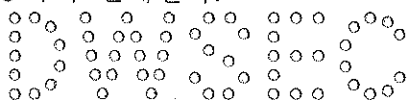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그 조건을 포함하여 기타 업무수행 중 습득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기밀사항의 누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갑"과 "을"은 계약서 및 본 협약서의 어떠한 내용도 광고, 방송, 판촉, 마케팅 기타 활동에 상대방의 이름,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 약어, 유사어, 기타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 또는 인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 3 조에 따른 사용 및 기타 구체적인 사안별로 상대방의 사전 동의에 따른 사용 또는 인용은 가능하다.

제5조(위탁판매 범위)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목 및 판매한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매각 및 설정)

- ① "을"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납입한다.
- ② "을"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일자,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의뢰서를 설정당일에 "갑"에게 송부(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갑"은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자, 집합투자기구명,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집합투자기구 설정통보서를 설정당일에 "을"에게 송부(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집합투자기구 설정대금을 설정일 영업마감시간까지 지정한 자금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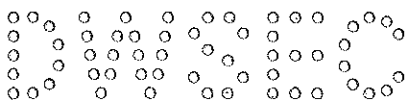
- ① "을"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을"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을"은 이를 환매청구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② "갑"이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을"은 "갑"에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일부해지가 예상될 경우 "갑"에게 해지 예정일자 및 해지 예정금액을 사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⑤ 집합투자기구의 일부해지시 "을"은 영업시간 중에 "갑"과 유선으로 협의한 후 일부해지 청구서를 "갑"에게 송부한다.
- ⑥ 동일날짜에 동일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복수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가 일부해지를 청구할 때 해지대상 집합투자재산중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어 해지청구대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은 지급가능한 금액을 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가 해지요청한 좌수에 안분비례하여 지급한다.
- ⑦ "갑"이 "을"에게 해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갑"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금화하되,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으로 현금화하도록 노력하며 "을"에게 손실이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8조(자금결제)

- ① "갑"과 "을"은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정하는 지정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당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상호협의를 거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갑"과 "을"은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신탁업자를 통하여 설정, 해지,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기구보수 등과 관련된 자금을 결제한다.
- ③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등으로 신탁금 등의 납입시 당해 신탁업자의 신탁업무전담부서로 이를 송금 처리한다.
- ④ "갑"은 집합투자기구 해지 등으로 해지금(상환금 포함)등 지급시 해당 신탁업자에게 지시하여 "을"의 한국은행당좌계좌 또는 상호협의를 "을"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하되, 상호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준가격의 통지)

- ① "갑"(또는 "갑"의 사무관리회사)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파표 기준가격을 매일 영업시간 개시 이전까지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의 통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지연사유와 통보가능시간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갑"(또는 "갑"의 사무관리회사)은 기준가격 및 파표기준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기준가격 및 파표기준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하여 "을"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또는 "갑"의 사무관리회사)의 책임으로 하며 "을"은 기준가격산정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또는 "을"의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갑" (또는 "갑"의 사무관리회사)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다만,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계부서장의 책임하에 유선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보수)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을"이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제 1 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인출일에 "을"에게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판매관련비용)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공)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을"의 요청이 있을 시 "갑"은 집합투자재산명세서 등을 "을"이 정한 방법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안내서 등을 작성해 "을"에게 제공한다.

③ "갑"은 "을"의 요청시 "을"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범위는 관련법령 등을 준용한다.

④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이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산내역이나 상환내역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⑤ "을"은 "갑"의 요청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13조(계약해지의 효과)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갑"과 "을"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이 동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전부 해지되거나 신탁원본이 전액상환될 때까지 계약서 및 협약서의 규정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 등 성질상 그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통보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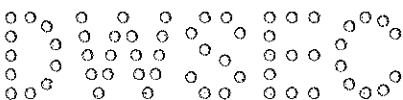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교환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번호로 팩시밀리(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해 통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처리)

본 협약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각각 "갑"과 "을"을 대표하는 위탁판매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업무 부서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 "을"은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이나 "갑"에 관한 기타사항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따른 손실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이 제공한 자료에 과장 또는 허위의 사실이 존재하고 "을"이 과실 없이 이를 신뢰하여 그대로 과장 또는 허위로 설명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한다.

③ 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안은 관련법령 등, 집합투자규약 및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④ “을”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절차(이하 “자금세탁방지절차”라 한다.)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절차 관련법령 및 내부절차/규정을 준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 이러한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보장한다. 특히, “을”은 계좌개설(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전에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 확인(Know-your-customer) 절차를 수행한다. “을”은 자금결제자 및 최종수익자(final beneficiaries)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수탁자(fiduciary entity), 신탁(trust, 집합투자기구 포함), 재단법인, 자선단체 기타 유사한 단체에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⑤ “을”은 “갑”이 요청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질문서에 성실히 회신해야 한다.

제17조(협약서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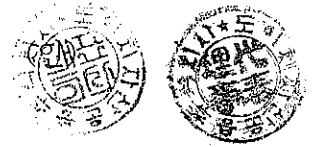


2009년 4월 15일

집합투자업자(갑)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대행회사 (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우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성 태

